

제 2397호
2015. 09. 30.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조 려
 - 제1263호: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제1264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 제1265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 제1266호: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 제1267호: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 제1268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 제1269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 공 고
 - 제2015-678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
 - 제2015-683호: 2015.6.1.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공시 40
 - 제2015-688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4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63호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용자 간”을 “이용자 간”으로, “주고받을”을 “주고 받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민원사무중”을 “민원사무 중”으로, “처리되는”을 “처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료관리담당자”를 “자료관리 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알권리”를 “알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운영주관부서(이하 “시스템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관리부서”를 “운영주관부서(이하 “시스템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관리부서”로, “필요시”를 “필요 시”로, “위탁관리”를 “위탁하여 관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스템운영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스템운영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제공시”를 “정보제공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관리담당자”를 각각 “정보관리 담당

자”로, “자료관리체계”를 “자료관리 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관리담당자”를 “정보관리 담당자”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없은”을 “없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청대상민원”을 “신청대상 민원”으로, “첨부서류”를 “붙임서류”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를 “민원은 접수”로,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참여등”을 “참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운영”을 “홈페이지 등 이용 참여행사 운영”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구정참여 활성화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거나 SNS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개최 및 자문단 운영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위탁관리”를 “위탁하여 관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스템운영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로, “강구해야”를 “마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스템운영부서”를 “시스템 운영부서”로, “사고발생시”를 “사고발생 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이용자 간----- -----주고 받을-----.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4.----- -----민원사 무 중-----처리하는-----.
5. “개인정보”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5.-----「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6.-----자료관리 담당자-----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 략)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7.-----알 권리----- -----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이하 “시스템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관리부서 (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 운영 주관부서(이하 “시스템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관리부서----- -----필요 시 -----위탁하여 관리-----. -----시 스템 운영부서-----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

현행	개정안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생략) ②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u>정보제공시</u>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항목별 <u>정보관리담당자</u>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정보를 관리하며, <u>정보관리담당자</u>가 교체된 경우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u>자료관리 체계</u>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담당부서의 정보관리담당자는 제공한 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생략) ②담당부서의 장(별도의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생략) ②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 결과의 과정을 <u>사이버 민원실</u>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u>민원인은 민원신청시</u>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보제공시</u>----- -----. ③ -----<u>정보관리 담당자</u>----- -----<u>정보관리 담당자</u>----- -----<u>자료관리 체계</u>----- -----. ④ -----<u>정보관리 담당자</u>----- ----- -----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없음</u>----- ----- ----- ----- ----- -----. 1. ~ 9. (현행과 같음)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u>신청대상 민원</u>----- -----<u>붙임서류</u>-----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u>민원은 접수</u>----- -----<u>전자민원창구</u>----- -----. ③ -----<u>위하여</u>----- -----<u>위하여 민원인</u> <u>은 민원신청 시</u>-----.

현행	개정안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u>지체없이</u>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② (생략) ③민원상담은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u>에 따라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 처리를 한다. <u>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u>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u>홈페이지 이용 참여행사 운영</u>)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참여행사를 개최하고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u><신설></u> 제17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② (생략) ③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u>시스템운영부서의</u>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u>강구해야</u> 한다. ②<u>시스템운영부서의</u>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자료와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	④ ----- ----- -----지체 없이----- -----.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u>----- -----. <u>제4장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u> 제13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 -----참여 등----- -----. ② ----- -----「<u>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u>」----- -. 제14조의2(<u>홈페이지 등 이용 참여행사 운영</u>)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구정참여 활성화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거나 SNS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개최 및 자문단 운영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탁하여 관리-----.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u>시스템 운영부서</u>----- -----마련하여야--. ② <u>시스템 운영부서</u>----- -----

현행	개정안
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를 정비하고 SNS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및 SNS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률 적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정
- 조례에 인용된 같은 법 제2조제2호 ⇒ 제2조제1호로 개정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법률명 띄어쓰기 정비

다. 홈페이지 등 이용 참여행사 관련규정 보완

- SNS 활성화 자문단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참여자에게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 지급 근거 보완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

- 띄어쓰기 정비
- 용어 정비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64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를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로 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2.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변경·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시 고려사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시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제1호 중 “지정, 변경”을 “지정, 변경, 지정취소”로 한다.

제14조를 제2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중구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중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유통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해당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에 대한 불복)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목적)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에서----- ----- -----.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현행	개정안
경우에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⑦ < 신 설 > 제9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호 ~ 3호 (생략) < 신 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2.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변경·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지정·변경·지정취소-----)----- 지정·변경·지정취소----- 1. 지정·변경·지정취소----- 2호 ~ 3호 (현행과 같음)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 신 설 >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중구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중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

현행	개정안
	<u>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u>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u>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u>1.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u> <u>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u> <u>3. 위원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u> <u>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u> <u>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제20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u> <u>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u> <u>1. 회의의 일시 및 장소</u> <u>2. 출석위원의 직·성명</u> <u>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u> <u>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u> <u>제2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u> <u>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유통업무팀장이 된다.</u> <u>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u>

현행	개정안
	를 처리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해당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에 대한 불복)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정부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조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규정 신설
- 나.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과제100선」 책자의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인간 분쟁을 조정 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가. 전통산업보존지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제4항)
- 전통시장 등록이 취소되거나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나. 분쟁 조정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2항)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분쟁 조정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 분쟁 조정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조항
- 다. 위원회 구성 신설(안 제15조)
- 라. 조정안에 대한 불복(안 제24조)
-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불복시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해 재조정 신청 가능함 (안 제20조제1항, 제25조, 제30조~제32조)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65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6조에”를 “법 제26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단,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미납구세 등의 열람)①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교부금전의 예탁)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67조 및 제68조”를 “법 제80조 및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제48조 중 “법 제141조”를 “법 제14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제9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 장) ① -----법 제26조제1항에 -----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 ----- 단,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①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미납구세 등의 열람)①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① ~ ② (생략)	제18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0조(구세환급금의 총당 등) ① <u>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을 총당한 경우 납부일은 총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u> ② (생략)	제20조(구세환급금의 총당 등) ①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u>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u>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 <u>법 제80조 및 조례 제22조</u>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u><삭 제></u>

현행	개정안
제30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삭 제>

현행	개정안
<u>제32조(참여자의 설정)</u> ① 세무공무원은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주민 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u><삭 제></u>
<u>제40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u> ①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u>10일간</u>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u>제40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u>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u>1개월간</u>----- -----. ④ (현행과 같음)
<u>제48조(지방세심의위원회)</u> <u>법 제141조</u>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u>제48조(지방세심의위원회)</u> <u>법 제141조</u> <u>제1항 각 호</u>-----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구세기본조례상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관련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으로 상위법령 위배소지 및 알 권리 보장

- 국제징수법 준용 규정을 적용하여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개정(안 제40조)

나.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개선

- 자치단체의 교부금전이 공탁되어 소멸시효 시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공탁”규정을 삭제하고 교부금전을 자치단체 구 금고예탁으로 일원화(안 제18조)

다. 규제완화 관련 자치법규 정비추진

-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 시 기한만료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정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정리 및 단서 신설(안 제9조)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안 제20조제1항, 제25조, 제30조~제32조)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한 인용조문 명시(안 제15조, 제23조, 제48조)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66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및 기본 시책

제1절 양성평등 시행 계획 및 추진체계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양성평등, 가족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직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있을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17조(구정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일가정 양립 지원)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 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장애인 가족·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3조(성차별 금지)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의 자립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 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및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7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구현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이나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3.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2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분석평가의 시기·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4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성별분석평가위원회(이하 “분석평가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석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구성 및 운영) ① 분석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분석평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37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4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구의 일반 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9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제2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4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제40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 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나. 양성평등관련 단체장 또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결산심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심의회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46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7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여성정책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45조”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제14조”를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로 하며, 제1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제18조”를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본문 중 “「여성발전기본법」제23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26조”로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상위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성 주류화 제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 1)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3조)
- 2)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4조 ~ 제5조)

나.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및 기본 시책

- 1) 양성평등 시행 계획 (안 제7조)
- 2)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해촉 등(안 제8조 ~ 제12조)
- 3) 회의 및 수당 등(안 제13조 ~ 제15조)

다. 양성평등참여 및 복지 증진

- 1) 양성평등 참여(안 제17조 ~ 제22조)
- 2)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안 제23조 ~ 제26조)
- 3)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안 제27조 ~ 제31조)

라. 양성평등정책 효과 증진 등

- 1)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및 위원회 설치 등(안 제32조 ~ 제34조)
- 2)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안 제35조)
- 3) 성인지 통계 및 교육(안 제36조 ~ 제37조)

마. 양성평등기금

- 1) 기금의 설치 및 용도, 관라·운용 등(안 제38조 ~ 제41조)
- 2) 기금운용계획 및 심의위원회(안 제42조 ~ 제46조)
- 3) 결산 등 기타 사항(안 제47조 ~ 제49조)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67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생 략)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 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③~④ (생 략)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100선」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수탁자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어린이집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 제22조 제2항은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수탁을 영구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안 제22조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68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과징금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2. 재활용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3. 제12조를 위반하여 반입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우리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과징금의 부과)에 명기된 과징금 부과 규정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법령의 부존재로 인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과징금의 부과) 삭제
- 종량제 미실시, 혼합배출, 젖은 음식물 등의 반입행위 과징금 처분 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69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별표3 종량제 봉투 가격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규정된 시기 도래 시 자동 인상한다.

별표3

총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1. 일반총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용 량	판 매 가 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3 L	80	90
5 L	120	130
10 L	220	250
20 L	440	490
30 L	660	740
50 L	1,100	1,250
75 L	1,650	1,880
100 L	2,220	2,500

○ 사업장폐기물용

용 량	판 매 가 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50 L	1,800	2,000
75 L	2,700	3,000
100 L	3,600	4,000

2. 특수총량제 봉투

용 량	판 매 가 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20 L	1,840	2,040
50 L	4,590	5,1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과태료)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따른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2003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 봉투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실화
- 나.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조항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개선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상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제40조)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 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안 제20조 제2항 관련 별표 3)
- 별표 3 > 종량제 봉투가격

공 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78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저금리로 인해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매년 기금 사업비는 축소되고 있는 바, 지역 어르신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제5조 4항에 규정한 기금사업 지원금 범위 변경
 -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범위를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에서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3396-5364, FAX: 3396-8732, 메일: chang1626@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u>기금 적립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u>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u>기금 적립금의 이자 수입 범위에서</u>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83호

2015.6.1.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15.6.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5. 9 . 3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시기준일

- 2015년 6월 1일
- 개별주택가격 정정 : 2014년 ~ 2015년 1월 1일

2.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 개별주택가격

3. 공고기간 : 2015. 9. 30. ~ 10. 30.

4. 개별주택가격 비치장소

중구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는 2015.6.1.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정정 결정·공시내역과 같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가능

5.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세무1과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시행일

2015.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별주택가격 정정은 결정·공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88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3-2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 ☎ 02-3396-5762)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람요지

가. 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사업 개요

구 분		3-1구역	3-2구역
시행위치		서울시 중구 입정동 189-1번지 일원	서울시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원
시행면적		4,661.2㎡	4,983.4㎡
사업시행자		세운삼구역특수목적(주) 대표이사 선권수 (주소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8호)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	
건축계획	층수	지하7층/지상20층	지하7층/지상20층
	연면적	48,526.72㎡	49,055.96㎡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2. 공람기간 : 2015.09.30. ~ 2015.10.14.

3.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62)

4.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